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연월일	2021. 12. 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1. 12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(2022. 1. 13. 字 시행)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칙에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13조)
 - 위 원 수 : 5명(민간전문가)
 - 위원임기 : 2년(연임가능)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제66조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7조”를 “제65조”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
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
경우

제13조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윤리심
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6 5조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 ~ 제12조 (생략)	제4조 ~ 제11조 (현행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2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

<신 설>

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
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
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
우
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
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
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
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
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
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
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
정이 있는 경우

제13조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
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
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
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
야 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